

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24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2. 7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보고이유

- 초등 방과 후 돌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련사업 전반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함.

2. 근거법령

- 가.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- 나.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

3. 사업내용

- 가. 위탁시설 :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(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)
- 나. 위탁범위 :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
- 다. 위탁예산
 - 운영비 : 월 100만원
 - 인건비 : 센터장(월 309만원) 돌봄선생님(월 287만원)
- 라. 시설규모
 - 전용면적 : 162.93m²
 - 주요시설 : 활동실(98.23m²) 사무실(33.52m²) 다용도실(31.18m²) 등
- 마.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
- 바. 위탁기간 : 수탁일로부터 5년간

4. 향후일정

- 가. 2023. 2. :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
- 나. 2023. 3. : 위·수탁 협약 체결
- 다. 2023. 4. : 시설 리모델링 공사
- 라. 2023. 5. : 위탁운영 시행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6조(운영방식)

- ① 센터는 군 직영방식 운영이 원칙이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각종 자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센터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(이하 “사무위탁조례”라 한다)를 따른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